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16-384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경기도 광주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12.20.)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기간 도과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18.(수)	2026.11.23.(월)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2.03.(목)

■ 청약시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2026년 06월 23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 진행 중인 아파트로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 방문 가능 함.)

※ 본 아파트의 금회 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변경(취소)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자에 대한 융자 지원 유의 사항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2.)에 적용한 중도금 조건(대출 알선)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2.)를 준용하오니 해당 모집공고(청약홈 검색 기능으로도 조회 가능)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현재 준공된 단지와 상이한 부분 등은 제외)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class.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46**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55**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23.(월)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2.0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사무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5)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2.12.20.)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 451호(2026.11.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4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7~24층 9개동 총 840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잔금 납부 이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수 내역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6930046	01	059.8670A	59A	59.8670	19.6058	79.4728	51.4723	130.9450	33.8043	1	**1**	102-1302
	02	059.7670C	59C	59.7670	20.1127	79.8797	51.3863	131.2659	33.7479	1	**1**	101-1806
	합 계									2	**2**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수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20%)	잔 금 (8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6.12.31.
59A	102-1302	1	176,702,000	239,984,000	416,686,000	83,337,200	333,348,800
59C	101-1806	1	176,407,000	233,281,000	409,688,000	81,937,600	327,750,400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호수	구분/품목		품목(규격)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2026.12.31.
59A	102-1302	발코니	발코니확장	기본확장형	18,000,000	3,600,000	14,400,000
		옵 션	복도창고	시스템가구 2. 메탈슬라이딩도어	1,200,000	240,000	960,000
			현관중문	메탈슬라이딩도어(중문)	1,000,000	200,000	800,000
			거실 특화벽	벽 시트판넬	310,000	62,000	248,000
			전기쿡탑(제조사:삼성전자)	NZ63T5701AK	400,000	80,000	320,000
			시스템에어컨(2실: 거실+안방) (제조사:LG)	실외기 : RPUQ0252S2R 실내기 : (거실) RNW0520C2SP (안방) RNW0200C2SP	3,300,000	660,000	2,640,000
		합 계			**24,210,000**	**4,842,000**	**19,368,000**
59C	101-1806	발코니	발코니확장	기본확장형	17,500,000	3,500,000	14,000,000
		합 계			**17,500,000**	**3,500,000**	**14,000,0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2.**)의 전기쿡탑은 구모델 제품 생산 중단으로 NZ63T5601AK에서 NZ63T5701AK로 변경되었습니다.

※ 공통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을 승계하여야 하며, 마이너스옵션, 추가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 약정일이 경과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금은 자납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납부계좌	iM뱅크	504-10-404941-0	코리아신탁(주)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6.(목) ~ 2026.12.05.(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2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2026.11.27.(금) / 10:00~16:00
서류제출 장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5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시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 공통 안내사항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9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

계약체결 일시	2026.12.03.(목) / 10:00~16:00
계약체결 장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4-5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금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본인 직접 계약)**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통장사본		• 수입인지 비용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 50%씩 부담 - 제출된 통장사본으로 75,000원 환불 진행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당사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계약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table>
<tr><td>주택처분
기준일</td><td>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td>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td></tr>
</table>

9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1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현재 준공된 단지와 상이한 부분 등은 제외)**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위약금 발생 등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알선 또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모든 분양대금은 입주예정자(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잔금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의 잔금 중 어느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잔금 납부 기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6.12.31.)**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 이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송정파크 주식회사	중흥토건(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법인등록번호	134211-0231110	205511-0004135
사업자 등록번호	333-86-01669	416-81-1336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